

2022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2022.7.28.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
한수구(watamine@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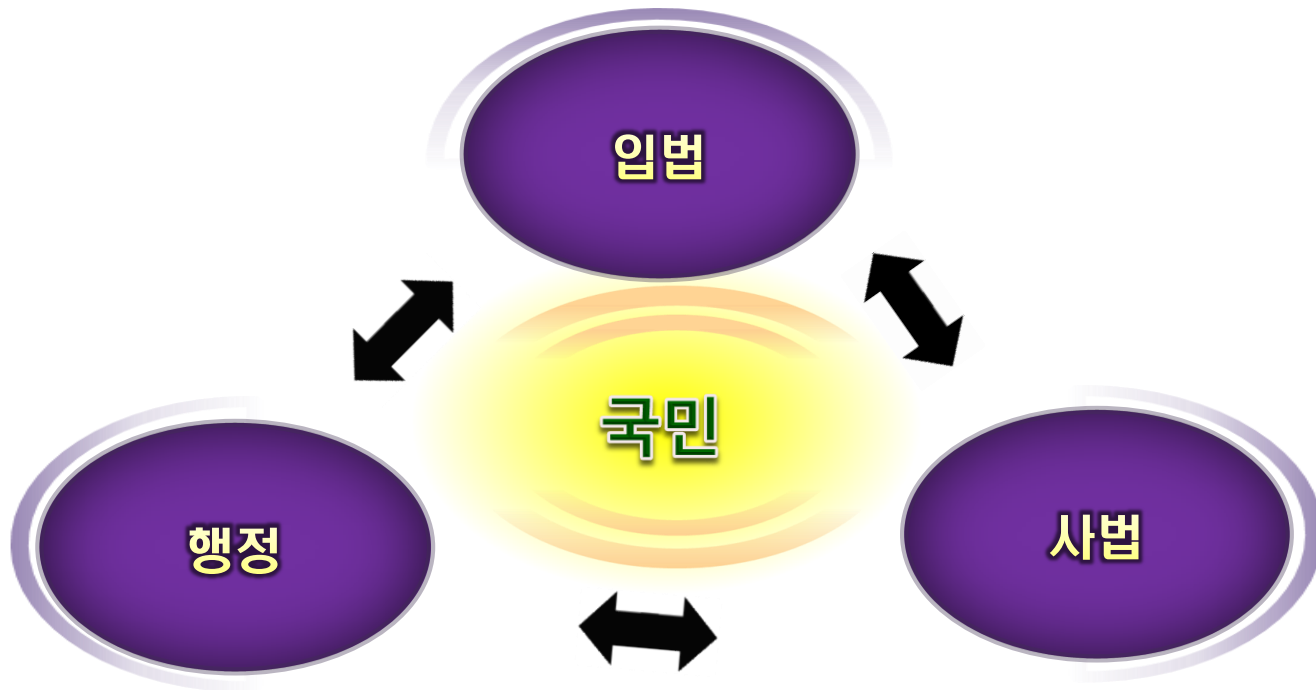


Contents

- I. 청렴시민감사관이란?
- II. 설치 및 운영 실태
- III. 주요 활동사례
- IV. 향후 발전방향

I.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국가운영(통치) 원리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안위와 국민행복 추구

⇒ (한계) 관료주의, 그들만의 리그, 상황변화 대응성 부족 등

옴부즈만의 태동과 의미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선진국에서 대부분 도입)
- ② 호민관(護民官)이란 뜻으로 **행정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

- ③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 받는 **국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보충적 국민권의 구제** 제도

 소위 행정의 A/S man + mentor 역할

옴부즈만(Ombudsman) 특성

제도	내용	결정의 구속력	접근성	구제의 유연성
행정소송	사법구제 제도	기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부담 • 장기간 소요 	현행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률해석에 의해 판단되는 권리구제 방식
행정심판	쟁송절차	기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작성 • 절차상 어려움 • 기일준수 (90일 이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익구제	공표권 감사의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비용 • 접근성 용이 • 절차 최소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행정기관의 직권 시정 유도, 민주적이고 다양한 대안제시

주요국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설치근거	독립법 (권익위법 등)	헌법, 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헌법, 독립법
설치연도	2008년	1809년	1962년	1974년	1972년	1975년
소속	행정부	의회	의회	의회	독립기관	의회
옴부즈만 수	15인(합의제)	4인(독임형)	2인(독임형)	3인(독임형)	1인(독임형)	25인(합의제)
권한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대중정보고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장계소추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민원처리건수	연 35천여건	연 7천여건	연 5천여건	연 19천여건	연 5,500여건	연 23천여건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유형

유형		특징
소속	의회형 옴부즈만 (스웨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	-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행정부형 옴부즈만 (한국, 프랑스 등)	- 행정부 수반에 의해 임명, 독립성 약함 - 민원처리 협조는 용이
	공공 옴부즈만	- 금융보험·회계업무 등의 사적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을 처리(권고)
	민간부문 옴부즈만	- 1990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
관할범위	일반 옴부즈만	- 대부분 일반 옴부즈만
	특수(전문) 옴부즈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의사결정 방식	독임형 옴부즈만	- 최종 결정을 1명이 하는 경우 - 대부분 채택, 간이, 신속성이 장점
	합의형 옴부즈만	- 2인이상 합의로 결정, 시간소요, 독립적

옴부즈만 VS 청렴시민감사관

구분		옴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2013.3월)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시민)의 대리인 ·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시민)의 고충사항(민원, 부패, 위법·부당 행위 및 공직자의 권력 오·남용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 필요시 시정요구 또는 권고를 통해 국민(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갈등요인 해소 	
차이점	직무범위	·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 등
	자격요건	· 공공분야 전문성 등	· 공공분야 전문성 + 청렴성과 반부패 의식 등

* 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 참고

감사 VS 청렴시민감사관

구분	감사	청렴시민감사관
공통점	· 국가(공공기관)의 안위와 국민(시민) 행복 추구	
구성	· 기관 내부 임명 또는 외부 공모	· 기관외부 인사 위촉(전문가, 시민사회 등)
절차적 측면	· 사후적 중점, 일부 예방활동	· 사전예방 중점, 일부 사후적 활동 참여 * 각종비리 사전예방, 제도개선 제안 등
판단기준	· 법규 등에 의한 판단	· 법규 등 +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 (합목적성 등)

II. 설치 및 운영 실태

설치 근거

구분	설치 근거	비고
중앙행정기관	법률(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 등)	권익위, 인권위, 방위사업청 ombudsman, 중소기업 ombudsman 등
지자체 교육청	조례(서울특별시 시민감사ombudsman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서울시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예규, 규정, 규칙, 사규, 지침 등	한수원, KOTRA, 서울교통공사 등
기타	법률(소비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소비자보호원, 외국인투자 ombudsman 등

구성

구분	내용
명칭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 도민감사관 등 다양
인원	최소 2명~최대 187명 등 기관의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편
임기	최초 2~3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기관별 사정에 따라 임기 연장)
모집	(기관공모) 공모 후 기관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위촉 (추천) 추천 후 기관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위촉
운영	상설기구 설치(권익위, 서울시 등) 또는 월별, 분기별 운영 등 다양
자격요건 (예시)	관련(유사)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판·검사, 변호사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기업 2급이상 임직원 경력자,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기술사·공인노무사·건축사 등 전문성을 인정받는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그 외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소속자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구성 참고) 우리 사회 주도층

Clean korea

학
계

경
제
계

종
교
계

언
론
계

시민
사회

공공
기관

견제와 균형(비판적 협력)

주요 직무와 권한

<p>주요 직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②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개선 건의·요구 ③ 부패 관련 민원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조사·분석 ④ 시정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⑤ 부패방지(예방)·청렴정책 지문 및 의견제시 ⑥ 부패예방(청렴) 교육 ⑦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⑧ 고충민원 처리 및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건의 ⑨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⑩ 그외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공공기관이 정하는 사항 등
<p>대표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 및 의견 청취(출석요구 등) ② 부패관련 제도·관행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회신 요구 ③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 감사요구, 시정요구, 관련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④ 필요시 특정사안에 대한 직접 감사 참여 ⑤ 청렴시민감사과 활동결과 기관장 등에 보고 및 대외 공표 등

청렴시민감사관 해촉 사유(예시)

- ①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 ②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③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을 수수**한 경우
-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 ⑥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사회적·도덕적 불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를 어겼을 경우
- ⑩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기능(상설기구)

- ① 주민 및 시민감사 청구사항 심의 및 감사
- ② 시민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행정 A/S)
- ③ 공공사업 감시·평가(총 공사비 30억원이상 공사, 5억원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기타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④ 민원배심법정 운영(장기 미해결, 특이·반복민원 등)
- ⑤ 시민 생활 현장민원 살피미 등

(참고) 도민감사관 주요 직무

❖ 감사 관련사항 등의 제보

-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위법·부당 사항, 주민생활 불편 및 불만사항
-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

❖ 감사규칙 등에서 정한 감사종류별 감사 관련 사항

-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
-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

❖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참고]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상황

- ❖ 감사 관련사항 등 제보, 종합감사 참여, 간담회 참여, 연찬회 참여, 선진지 견학 등
 - (제도개선 사항) 폐교 재산관리 제도개선 등
 - (교통불편 사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 (보행불편 사항) 교량 보행자 인도 설치 등
 - (각종 시설 보수 사항) 방치된 가드레일 보수 등
 - (청소·환경 관련 사항) 도로변 불법쓰레기 청소 등
 - (안전 관리 사항) 절개지 낙석 위험물 조치 등
 - (예산 낭비 사항) 전형적 전시행정 등
 - 기타 공원 내 조각작품 변색, 방치된 임시농산물 판매장 정비, 각종 공공 시설물 표기오류 시정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특징과 효과

<p>절차적 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공공사업과 부패취약분야 추진과정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② 특히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계약 이전단계부터 계약이행, 완료단계까지 관련 역할 수행
<p>고객 지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의 감사절차보다 간편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으로 고객접근성 용이 ② 기관과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독립적(제3자적) 판단과 역할
<p>보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의 시각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패관행의 근절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도 제고 ②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③ 효율적인 예산 집행 ④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Ⅲ. 주요 활동사례

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언과 자문 역할(기관의 주요 관심사항)

- 감사부서 중심의 청렴대책으로는 한계 ➔ 경영측에 청렴대책반 설치
- 기관장과 간부들의 청렴 리더십 및 선도적 역할 주문 ➔ 기관장 면담
- 기관장과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청렴 총력 추진체제 구축 권고
-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자문
- 부패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권고
- 부패, 갑질, 성 비위 등 대리신고인 제도 도입 권고
- 청렴도가 낮은 분야 익년도 의무적 특정감사 권고
- 기관장과 노측과의 청렴도 향상 협약체결 권고
- 근무평정 일상감사 도입 및 일부기관 인사부서 자체승진 제한 권고
- 성과평가와 청렴노력도 연계 강화 권고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권고
- MZ세대와의 소통과 역할분담 강화 권고 등

청렴도평가 관련 참고사항

[참고] 청렴도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감점(최고 10%)**

[참고] 청렴체감도 평가항목

구 분	외부 업무 (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 인식 (외부 : 6개, 내부 :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권한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소극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권한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 경험 (각 2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참고]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4개 지표	①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0
	②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5
	④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5
청렴정책 추진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10
	⑥부패방지 제도 구축	10
	⑦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10
	⑧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7
	⑨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7
시책 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7

[참고] 부패실태평가 적용 부패유형

구분	적용 내용	부패행태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등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건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만 해당)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 상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비밀·미 공개정보 이용 부당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등

주요 활동사례

구분	확인 또는 권고 사항
② 공공사업 입찰 제안 평가회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장 선정의 투명성 제고(랜덤방식 권고) •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검토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의 적정성 검토 • 평가위원의 청렴서약, 이해충돌여부 확인 • 제안사명 익명처리 여부 확인 • 평가위원 무단이석, 상호 협의 제한 • 제안발표 및 질문시간 등의 형평성 여부 확인 • 제안평가위원으로 참여 • 평가결과 즉시 채점 여부 확인 등
③ 제도개선권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대리신고인 제도 도입 권고 • 유사 신고시스템 통합 권고 • 감사실 직원 자격요건 강화 권고 • 수의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권고 • 법인카드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제 도입 권고 • 제도개선과제 공모결과 평가 참여 등

구분	확인 또는 권고 사항
④ 부패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법규/지침 전반 검토 및 개선권고 • 정관, 규정, 규칙, 요령, 지침 등 각종 규정의 혼재로 혼란 (유사 규정 통폐합 권고) • 내부와 외부 위원 위촉 비율 명확화(과반수 이상, 1/3 이상 등) • 업무추진비카드 부서별 통합관리 권고 •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의/경고 이상 처분 시 포상/해외출장/성과평가 제한/불이익 조항 설치 권고 • 감사반 구성 시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가능 규정 설치 권고 등
⑤ 청렴위원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윤리경영 실천과제(100대 등) 선정 • 자체감사결과 검토의견 제시 • 청렴도평가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제시 • 제도개선과제 선정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토의 등

구분	확인 또는 권고 사항
⑥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취약분야,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 특정감사 요구 • 부패 제보 사건 감사 요청 • 시민생활부조리 제보 사건 감사 요청 등 * 다른 청렴시민감사관은 일부 감사 참여사례도 있음
⑦ 인사(징계)위원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채용 청탁(인턴) 관련 징계위원회 참석(원칙 처분 조치) • 특정감사 결과 징계위원회 참석(증거 주위에 입각하여 처분토록 의견제시) • 부패 관련자 즉시 직위해제 권고(혐의 입증 후 해임조치)
⑧ 인사제도 혁신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평정 일상감사제 도입 권고(자체 규칙/훈령으로 제정) • 인사관련 청렴도가 낮은 기관 인사부서 근무자 자체승진 제한제도 도입 권고 • 성과평가결과 근무평정 반영 권고 • 청렴노력도 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 권고 • 고위직 대상 청렴검증제도 도입 사례 등

구분	확인 또는 권고 사항
⑨ 기관장, 임직원 및 노조 심층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리더십, 조직문화, 내부비리, 계약체결 등 기관 전반에 대한 1:1 심층면담(혁신방향 제안) • 노조와 집행부(감사실)과의 청렴정책 공조 제안(협약체결) • 기관자체 청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 의견제시 등
⑩ 청렴 교육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및 임직원 대상 청렴도 향상전략 특강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갑질근절, 행동강령 등에 대한 특강 • 청렴리더 대상 청렴학습모임 추진 • 부서별 청렴담당자 및 MZ 세대 공직자와 청렴시민감사관 청렴 간담회 제안
⑪ 청렴시책, 각종 제안 공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청렴시책, 제도개선 안 공모 심사

구분	확인 또는 권고 사항
⑫ 권고 또는 시정 요구사항 이행실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시 확인
⑬ 공익제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시민감사관 책임 운영 사례
⑭ 기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또는 소속기관 현장 방문(현장확인, 의견청취) • 감사품질 관련 의견제시 • 부서별 청렴노력도 평가 참여(의견 제시) • 부패, 갑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신고 상담 및 접수 • 중요 계약 및 고충민원 검토 및 조정 • 대형공사장, 취약시설 현장점검 • 시민생활현장 불편 또는 시정사항 모니터링 및 제보 등

IV. 향후 발전방향

현대적 의미의 청렴

❖ 적발·처벌 등 부패 사후통제(negative)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성제고(positive)로 변화

※ 부정비리 ⇒ 기관불신 ⇒ 갈등유발 ⇒ 정책실패 (악순환)

전통적 부패

- 뇌물수수
- 횡령·배임
- 예산낭비

※ 공무원은 2.9%만 부패 인식

- 글로벌 스탠더드
- 국민 기대수준 상승

※ 국민은 49.8%가 부패 인식

현대사회 부패

- 뇌물·향응수수
- 횡령·배임
- 예산낭비
- 도덕적 해이(막말, 성범죄, 음주운전 등)

- 연고·온정
- 알선·청탁
- 이권개입, 사익추구
- 복지부동, 책임소홀

- 불투명·불공정
- 이익충돌
- 공익침해
- 고객관리 소홀

세대간 문화(관계) 충돌 현상

※ 소통 + 집단지성
+ 투명 + 공정

② 기성세대의 **부패온정문화** VS
MZ세대의 **청렴공정문화**

① 간부들의 **수직적 리더십** VS
MZ세대의 **수평적 문화**

③ 기성세대의 **팀플레이** VS
MZ세대의 **개인플레이**

수직
VS
수평

부패/온정 vs 청렴/공정

단체/일 vs 개인/가정

문화충돌

④ 기성세대의 **결과중시** VS
MZ세대의 **과정중시**

[참고] 부패의 정의(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상기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 부패** :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발전방향(제안)


발전방안	주요 내용
① 법적, 제도적 설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조례, 정관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설치 근거규정 마련 필요
②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발전적 운영방향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규, 명칭, 자격요건, 인원, 운영 형태, 임무 및 역할, 예우 등 실태조사 • 현행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일률적 기준 제시(기관별, 유형별 차별화 필요) •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K-청렴시민감사관제도 정착 필요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례회의 참석, 제안평가회 참관, 제도개선 권고, 일부 특정감사 참여 등 제한적 • 공직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분야로 역할 확대 필요 * 징계위원회, 자체감사, 특정감사, 고충민원 조정·중재, 대리신고인제도, 각종 평가, 내부 신고 및 상담 등

발전방안	주요내용
<p>④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청렴시민 감사관 역할 재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부서 5인 미만 규모가 작은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고충민원 등 유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불가피 • 특히 도민감사관의 경우 감사적 역할보다 시민생활현장 불편사항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영 (향후 고충민원 처리도 청렴노력도 평가 반영 검토)
<p>⑤ 일과시간 후, 공휴일 상시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공휴일에 시민생활현장 등에서 각종 부패 및 부조리 발생 우려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직사회 및 사회적 부조리 근절 * 활동 성과에 따른 별도 예우 필요
<p>⑥ 청렴시민감사관 예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회의 외에 별도의 역할수행(부여) 시 관련 예우 필요 * 상시모니터링, 별도 시책 참여시 성과에 따른 수당, 포상 등 예우 검토

발전방안	주요내용
<p>⑦ 위촉 기관과 청렴시민감사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분쟁발생 시 책임한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업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 • 해촉사유 등 분쟁 발생시 책임한계를 설정할 필요 * 권한과 책임 일치
<p>⑧ 소속기관, 현장 방문 · 점검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중심/회의 방식의 운영으로는 역할에 한계 • 소속기관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치 강화 • 사업현장, 시민생활 현장 방문 및 점검, 개선방안 모색 • 시민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 중재 역할 강화
<p>⑨ 우수사례 발굴 · 전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공모) 및 전파를 통해 청렴시민 감사관 제도가 우수 청렴 민 · 관협력네트워크로 발전 노력

청렴시민감사관의 선도적 역할

- ❖ [시대상황]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
- ❖ [필요성]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이 중요

- 
- ✓ 지금은 집단지성의 소통과 민·관 협치시대
 - ✓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기관) 실현 한계
 - ✓ 청렴시민감사관의 헌신적인 참여와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 청렴하고 당당한 기관과 국가 실현에 헌신적·선도적인 역할 기대